

유럽연합의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지식 재산권화와 법적 보호

박 원 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집]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신 외국법제정보는 창조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5호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제6호 기술·문화·산업간의 연계와 융합

제7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제8호 중소기업의 회생간소화

I. 들어가며

II. 유럽연합의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1.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적 보호범위
2. 유전자원의 지적재산권적 보호범위

III. 이행준수의무 이행 방안

1. 이용자의 범위
2. 이용자의 일반적 의무: 적절주의의무
3. PIC와 MAT에 따른 양도조건
4. 이용자의 구체적 의무
5. 이용자에 대한 이행준수 감시
6. 벌칙조항

IV. 평가 및 시사점

1. 적용범위
2. 정의조항을 통한 법률안의 명확성 제고
3. 이행준수의무 이행 방안

V. 결 론

I. 들어가며

1992년 브라질 리우정상회의에서 채택되어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이하, 협약)은 그 동안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간주된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에 대해 지적재산권적 보호를 인정하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협약은 제1조 목적조항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평하게 나눌 것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은 국가의 관할권 내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서로 나누어 가지도록 규정하였으나, 세부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국가들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2010년 10월 29일 채택된 나고야의정서¹⁾는 이러한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협약이 발효한 지 17년이 지난 2010년에야 드디어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적재산권적 보호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법률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2012년 EU집행위 규정(안)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안)²⁾을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마련하여 유럽의회에 제출하였다. 동 규정(안)의 특징은 바이오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유전자원의 적용대상에 파생물(derivatives)을 명시하지 않은 점, 이익공유의 대상에 후속적 적용 및 상업화(subsequent application and commercialization)에 대한 언급 누락, 사전통보동의(prior informed consent: PIC)와 상호합의조선(mutually agreed terms)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을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취득된 것에 한정한 점, 이익공유의 대상국을 원산지국(country of origin)뿐만 아니라 제공국까지 확대, 이용자의 준수내용을 적절주의의무(due diligence)로 약화하고, 처벌의 범위를 단순 벌금(fines) 등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3년 4월 유럽의회 환경공중보건식품안전위원회(Committee on the Environ-

- 1) 정식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다. 2013년 9월 현재 나고야의정서는 92개국의 서명과 20개국의 비준을 확보하고 있지만, 효력발생을 위한 50개국의 비준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나고야의정서 서명국 및 비준국 현황에 대해서는, [http://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 참조.
- 2)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이하 EU집행위 규정(안) 또는 규정(안)).

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SEVI)는 유럽의회 EU집행위 규정(안)에 대한 1차 검토를 통해 수정(초안)³⁾을 제출하였는데, 동 수정(초안)은 사실상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률이라고 보여질 만큼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이러한 국내 이행방향은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유전자원 가공품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엄청난 재정적, 행정적, 절차적 부담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회는 2013년 9월 12일 우여곡절 끝에 제1차 수정본⁴⁾을 확정하였다. EU의회 제1차 수정본은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유럽연합 이사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제공국의 입장이 아닌 이용국의 입장으로 다시 복귀하였기 때문에 큰 수정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적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의 최신 동향을 유럽의회의 제1차 수정본을 통해 살펴 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유럽연합의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1.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적 보호범위

유럽의회는 모든 전통지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고야의정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제7조는 “국내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지역토착민사회(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LC)⁵⁾가 보유하는

-
- 3) DRAFT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이하 유럽의회 수정(초안), 또는 수정(초안).
 - 4) “Amendments adopt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on 12 September 2013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COM(2012)0576 C7-0322/2012 2012/0278(COD))(이하 EU 의회 제1차 수정본 또는 제1차 수정본).
 - 5) 2007년 UNEP에서 발간한 “Glossary of Terms for Negotiators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에 따르면, ILC란 다음의 3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문화적 단체와 그 후손을 의미한다: 첫째,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일부 와 역사적 연속성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둘째, 동 지역에 현재 살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살았던 단체; 셋째, 적어도 일부라도 그 특유의 언어적, 문화적, 사회/조직적 특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주변 인구 및 국가의 지배적 문화와는 어느 정도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적 그룹 및 그들의 후손들을 포함한다. 또한 스스로를 토착민으로 인식하는 사람들과 다른 그룹에 의해 토착민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이 해당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또는 승인과 참여에 따라 접근되고,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보장할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 그러나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⁷⁾

EU의회 제1차 수정본은 EU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정의조항을 채택하였다. EU집행위 규정(안)은 나고야의정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지만,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를 “MAT에 관련 전통지식으로 명시적으로 기술된 경우”에만 한정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나 유럽의회는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고 있었다. 즉 상호합의조건에 관련 전통지식이라고 기술된 것과 상관 없이 ILC가 보유하는 전통지식은 모두 PIC와 MAT 그리고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적 정의는 제1차 수정본에서는 찾을 수 없다.

2. 유전자원의 지적재산권적 보호범위

1) 유전자원의 정의

유럽의회 제1차 수정본은 수정(초안)을 그대로 복사하여 유전자원을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유전물질 또는 그 파생물”이라고 정의⁸⁾하여 유전자원의 ‘파생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쟁점은 과연 파생물이 의정서의 적용대상인가 하는 것이었다.

나고야의정서 제2조(용어의 사용)는 ‘파생물’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적 발현(genetic expression) 또는 대사작용(metabolism)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생화학적 합

-
- 6) 나고야의정서 제7조. 따라서 ILC 소재 국가는 국내법을 제정하여 ILC의 PIC 또는 승인과 참여에 따라 ILC 전통지식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접근 및 이익공유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데 있어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관한 토착지역공동체들의 해당되는 관습법, 공동체 규약 및, 절차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ILC 소재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불이익은 ILC 소재 국가에 있게 된다.
 - 7) Bavikatte, K. and Robinson, D.F., ‘Towards a People’s History of the Law: Biocultural Jurisprudence and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Law, Environment and Development Journal 7(1) (2011), p. 35. Available at www.lead-journal.org/content/11035.pdf.
 - 8) EU의회 수정본 제3.3조(Amendment 38 참조).

성물을 의미하고, 이러한 합성물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된다”⁹⁾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의정서 제2조 외에 그 어디에도 ‘파생물’이라는 용어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의조항에 있는 ‘생화학적 구성요소’가 파생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는데 대해서는 후속적 전문가회의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¹⁰⁾

2) 장소적 적용범위

EU의회 제1차 수정본은 소속기관인 SEVI의 수정(초안)을 배척하고 사실상 EU집행위의 규정(안)을 사실상 복사하며 “동 규정은 국가주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으로서, 유럽연합에 대하여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접근되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 그리고 또한 그 이용(utilization)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¹¹⁾고 규정하여 국가의 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으로 그 지리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즉 국가이원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3) 시간적 적용범위

EU의회 제1차 수정본은 EU집행위 규정(안)을 사실상 그대로 복사하여 “동 규정은 국가주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으로서, 유럽연합에 대하여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접근’되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 그리고 그 이용(utilization)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¹²⁾고 규정하여 수정(초안)과는 다른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동 수정본은 전문 (9)에서 “나고야의정서는 유럽연합에 대하여 의정서 발효 후 발생 또는 개시된 유전자원에 대한 ‘새로운 취득(new acquisition)’이나 ‘새로운 이용(new utilization)’에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나고야의정서 이전에 취득된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이 ‘새로운 용도로 이용’되

9) Id.

10) EU집행위 규정(안)은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 규정은 국가주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으로서, 유럽연합에 대하여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접근되는(accessed)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 그리고 ‘그 이용(use of such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유전자원의 정의를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유전물질’로 정의하여 ‘파생물’을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11) EU집행위 규정(안), 제2조1항.

12) EU의회 제1차 수정본 제2조(Amendment 37 참조).

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

III. 이행준수의무 이행 방안

먼저 유럽연합은 이행준수의무를 이행할 이용자(user)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용자의 일반적 주의의무와 구체적 주의의무로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1. 이용자의 범위

EU의회 제1차 수정본은 유럽의회 수정(초안)을 채택하여, ‘이용자’란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utilize)하는 개인 또는 법인’ 또는 ‘유전자원이나 유전자원에 근거한 가공품(products)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후속적으로 판매하는(commercialize) 개인 또는 법인’이라고 하여, 유럽의회의 수정(초안)과 제1차 수정본은 의정서의 인적 적용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비가공 상태의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 이용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전자원 ‘가공품(products based on genetic resources 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genetic resources)’을 후속적으로 판매하는 개인이나 법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이용자의 일반적 의무: 적절주의의무(due diligence obligation)¹⁴⁾

EU의회 제1차 수정본은 “이용자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이 해당 ABS 법률이나 규제 요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PIC와 MAT을 체결하여 접근 되었고, 그리고 이익공유가 상호 합의조건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ascertain)¹⁵⁾하여야 하고, ABS 관련 모든 정보와 문서 그리고 동 법률 규정의 준수사항에 관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탐색(seek), 보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3) EU의회 제1차 수정본 전문 (9)항(Amendment 21 참조).

14) EU집행위 규정(안) 및 유럽의회 수정(초안) 제4조.

15) Oxford Dictionary, to find out the true or correct information about something.

동 법안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첫째, EU집행위 규정(안)은 ABS 법률이나 규제 요건에 따라 접근되었는가를 확인할 적절주의의무를 요구하였으나, EU의회 제1차 수정본은 위 법률이나 요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PIC와 MAT을 체결하여 유전자원이 접근되었는가를 확인할 의무로 제한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제공국이나 원산지국의 ABS 법률이나 규제 요건 모두를 충족하였는가가 아니라, 동 법률이나 요건에 따라 PIC와 MAT의 체결하여 접근되었는가를 확인할 의무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나고야의정서 제15조 1항이 요구하는 바를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EU의회 제1차 수정본은 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 및 문서 그리고 이행법률 준수사항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무를 극대화 하고 있다.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모든’ 정보와 문서 그리고 이행준수 과정을 탐색, 보관, 그리고 전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나고야의정서가 요구하는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감시뿐만 아니라 이력추적(tracking)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의무보다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이 MAT에 이러한 의무를 요구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결국 점검기관의 의무가 될 것이다.

셋째,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합법적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의 정확성 또는 진위성 여부를 확인할 적절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용자가 유전자원 이용 관련 정보 및 문서의 진위성을 확인하는데 나타한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의 책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절주의의무 이행에 대한 증거를 적절하게 입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EU집행위 규정(안)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MAT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EU의회 제1차 수정본은 관련성 여부에 관계 없이 MAT에 따라 이익공유를 요구하여 MAT를 강제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이익 공유를 반드시 MAT를 통해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회의 접근방식이 의정서와 좀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ABS 관련 정보 탐색의무는 반드시 찾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찾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ABS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용자는 제공국의 ABS 관련 정보를 탐색하였으나 존재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이용자는 유럽연합 규정(안)의 관련 조항에 대한 준수사실에 관한 정보도 탐색, 보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3. PIC와 MAT에 따른 양도조건

EU의회 제1차 수정본 수정(초안)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은 국제이행준수증명서와 상호합의조건, 또는 사전통보동의와 상호합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상호합의조건이 없는 경우, 또는 후속이용자가 이전 상호합의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조건으로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려는 경우, 동 이용자는 원산지국으로부터 상호합의조건을 취득할 것이 요구된다”¹⁶⁾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상 의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양도는 국제이행준수증명서와 MAT에서 허용하는 경우, 또는 PIC와 MAT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MAT이 없는 경우, 또는 이전의 MAT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건으로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려는 경우 원산지국으로부터 MAT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PIC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 이원지역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의무는 삭제되었다.

4. 이용자의 구체적 의무

1)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기본 정보 탐색, 보관 및 전달 의무

제1차 수정본은 이용자가 제공할 정보의 범위를 기존의 유럽의회 수정(초안)보다 확대 또는 명확히 하고 있다. 첫째, 나고야의정서 제6조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고 있는 당사국으로부터 취득된 유전자원의 경우에는 국제이행준수인증서에 대한 정보와 MAT의 내용을 추가로 탐색, 보관, 그리고 양도할 의무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둘째,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일자와 장소,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내역(description)(이용 가능한 고유인식번호 포함),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이 직접적으로 획득된 출처(source)와 그 후속적 이용자, ABS 관련 권리와 의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 외에, 접근허가증(access permits)과 해당되는 경우 이익공유약정을 포함한 MAT가 포함된다.

16) 제1차 수정본 제4.1(a)조.

2) 지속적 의혹에 대한 추가 정보 획득 의무

EU집행위 규정(안)과 유럽의회 수정(초안) 그리고 제1차 수정본은 이전 없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사용의 적법성(illegality)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persist) 경우,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정보 또는 증거를 획득(obtain)¹⁷⁾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 외관상 위법성이 나타나는 경우

EU집행위 규정(안)과 유럽의회 수정(초안) 그리고 제1차 수정본은 이전 없이 해당 ABS 법률이나 요건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외관상 나타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적절한 허가증의 취득, MAT 체결 또는 사용을 중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¹⁸⁾

이 외에 이용자는 20년간 정보 보관 의무, MAT 체결 시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개도국 기술이전 확인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신탁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동 유전자원을 이용에 대한 적법성이 간주되던 혜택은 삭제되었다.

4) 책임기관 및 연락기관 관련 회원국의 의무

EU집행위 규정(안)은 국가책임기관과 연락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동 규정(안)의 적용을 담당하는 하나 이상의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규정(안)의 발효 시 그 명칭과 주소를 EU집행위에 통보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EU집행위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⁹⁾

EU집행위 규정(안)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신청하는 자에게 정보 제공하고, CBD 사무국과 연락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ABS 연락기관(focal point)을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U의회 제1차 수정본은 연락기관에게 유럽연합 관련기관과의 협의 의무를 추가하고 있다.²⁰⁾ 또한 연락기관뿐만 책임기관에게도 일반 대중과 이용자에게 유럽연합규정(안)과 협약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정보 제공

17) Oxford Dictionary, get sth, particularly by making an effort.

18) EU집행위 규정(안) 제4.2(c)조.

19) EU집행위 규정(안) 제6조.

20) 제1차 수정본 제6.3(a)조(Amendment 57 참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²¹⁾

5. 이용자에 대한 이행준수 감시

1) 점검기관의 설치 및 기능

EU집행위 규정(안)과 제1차 수정본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점검기관의 기능을 책임기관에 부여하고 있다.²²⁾ EU집행위 규정(안) 제9조는 제4조(사용자 의무)와 제7조(사용자의 이행준수 감시)에 규정된 요건에 대한 이용자의 준수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점검을 수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²³⁾

2) 점검발동요건

점검발동요건으로서 EU집행위 규정(안)은 점검의 수행은 EU집행위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제3자가 제공한 구체적 위반사항(substantiated concerns)을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 가능(may)²⁴⁾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EU의회 제1차 수정본은 추가적인 점검이 반드시(shall) 수행되어야 한다고 수정하고 있다.²⁵⁾

점검방법에 대한 EU집행위 규정(안)은 최소한의 다음의 네 가지 점검방법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첫째, 제4조에 따라 적절주의의무(due diligence)를 이행하기 위해 이용자가 채택한 조치에 대한 심사(examination). 둘째, 특정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제4조에 따른 적절주의의무 행사를 입증하는 문서 및 기록의 조사. 셋째, 현장감사를 포함한 실사점사(spot checks). 넷째, 제7조(이용자의 이행준수 감시)상의 자발적 신고(declaration) 내용에 대한

21) 제1차 수정본 제6.3(b)조(Amendment 58 참조).

22) EU집행위 규정(안) 제9조. 유전자원의 특성에 따라 복수의 책임기관의 설립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Cabrera Medaglia, J., Perron-Welch ,F .and Rukundo ,O., Overview of national and regional measur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implementing the Nagoya Protocol (CISDL: December 2011), http://www.sib.admin.ch/uploads/media/Overview_of_ABS_Measures_2011.pdf 참조.

23) EU집행위 규정(안) 제9.1조.

24) EU집�行위 규정(안) 제9.3조.

25) 유럽의회 수정(초안) 제9.3조(Amendment 55).

심사 등이다. EU의회 제1차 수정본은 규정(안)과 차이가 없다.²⁶⁾

3) 국제이행준수인증서 인정의무

국제이행준수인증서와 관련하여 EU집행위 규정(안)은 책임기관(점검기관)에게 국제인증서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이 PIC를 발급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ABS 법률 또는 요건에 따라 PIC와 MAT에 따라 접근 및 확립되었다는 증거로서 국제인증서를 수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²⁷⁾ 그러나 EU의회 제1차 수정본은 국제이행준수증명서가 없고 다른 적법한 문서로 인정되는 이행준수증명서가 있는 경우, 유전자원이 적법하게 취득되고 MAT이 체결되었다는 충분한 증거로 간주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안)은 원활한 점검업무를 위해 특히, 시설 출입과 문서 및 기록의 제출 등에 대한 용이성을 위해 이용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²⁸⁾ 제1차 수정본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행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책임기관(점검기관)은 제11조(별칙조항)과는 별도로 제9조 제1항의 점검업무 수행 후 또는 제7조 2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 후²⁹⁾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책임기관은 시정조치를 발동하여야 한다.³⁰⁾ 동 규정(안)은 또한 추가적으로 발견된 하자의 성격에 따라 회원국은 즉각적인 잠정조치를 채택할 수 있고, 특히 불법 취득유전자원³¹⁾의 압수 그리고 특정 용도의 이용행위를 중지할 수 있다고 재량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³²⁾

26) 유럽의회 수정(초안)은 첫째 점검대상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4조에 따른 적절주의의무를 행사했는가가 아니라 제4조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였다. 둘째 점검대상과 관련하여 제4조의 이행준수를 입증하는 문서 및 기록의 조사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제1차 수정본은 입장을 바꾸어 규정(안)에 대한 수정을 철회하였다. 제1차 수정본 제9조(Amendment 63).

27) EU의회 제1차 수정본 제9.5조.

28) EU집행위 규정(안) 제9.6조.

29) Id.

30) EU집행위 규정(안) 제9.7조.

31) EU집행위 규정(안)에 ‘불법 취득 유전자원(illegally acquired genetic resources)’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EU의회 제1차 수정본은 ‘불법 취득 유전자원’에 대한 수정(초안)의 정의를 ‘해당 국제법 또는 원산지국의 ABS 국내법(national law)을 위반하여 취득된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규제요건(regulatory requirements)’ 구질을 삭제하여 ABS 규율이 국내법률의 형식을 채택한 경우에만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해당 국제법’이란 인접하는 국가들 간에 지역 ABS조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2) Id.

그러나 제1차 수정본은 동 규정에 대해 이용자의 응답이 없거나 만족할 수 없는 경우,³³⁾ 그리고 발견된 하자의 성격에 따라 회원국은 즉각적인 잠정조치를 채택할 수 있고, 특히 불법 취득유전자원의 압수 그리고 특정 용도의 이용행위를 중지할 수 있다. 특히 동 행위에 대해 제1차 수정본은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제조된 상품의 판매까지 금지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³⁴⁾ 잠정조치의 대상에는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제조된 상품의 판매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1차 수정본은 추가적으로 위 잠정조치는 효과적이면서 비례적이고 예방적(dissuasive)일 것을 요구한다.

규정(안)과 제1차 수정본은 책임기관(점검기관)은 점검기록과 그 성격 및 결과, 시행조치에 대해 최소 5년간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³⁵⁾

4) 이용자에 대한 이행준수 점검방법 : 신고제도

EU집행위 규정(안)은 이용자의 이행준수 점검방법으로서 점검기관 외에 이용자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³⁶⁾ 동 규정은 유럽의회에 의해 대폭 수정, 추가되었다. 규정(안)은 먼저 회원국과 집행위위원회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공적연구기금 수령자에게 제4조에 따른 적절주의의무를 행사(exercise)한다는 것을 선언하도록 요청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제1차 수정본은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

규정(안)은 또한 이용자로 하여금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의거하여 개발한 제품의 시장판매승인 신청 시 또는 시장판매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상업화 시에 규정(안) 제4조에 따른 적절주의의무를 행사하였다는 것을 책임기관에 신고(declare)할 의무를 부과하였다.³⁷⁾ 그러나 EU의회 제1차 수정본은 이용자로 하여금 제6조 1항에 따라 설립된 책임기관에 제4조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다(fulfilled)³⁸⁾는 것을 신고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3) EU의회 제1차 수정본 제9.7(2)조(Amendment 63).

34) Id.

35) EU집행위 규정(안)과 제1차 수정본 제10조.

36) EU집행위 규정(안) 제7조.

37) EU집행위 규정(안) 제7.2조.

38) 동 구절은 유럽의회 수정(초안)에서 '준수했다(complied with)' 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1차 수정본에서 수정되었다.

Id(제1차 수정본 Amendment 60 참조)

- 가. PIC와 MAT 확립 시
- 나.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이용 관련 연구기금 수령 시
- 다. 국내 또는 국제기관에 특히, 접근된 유전자원, 파생물을 포함한 가공품 그리고 바이오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제법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대상으로 한 특허신청 또는 새로 운 식물품종에 권리 신청 시
- 라.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의거하여 개발한 제품의 시장판매승인 신청 시
- 마. 시장판매승인이 요청되지 않는 경우 상업화 시³⁹⁾

유럽의회의 수정(초안)은 보관 과정의 엄격성 및 추적가능성 그리고 법적 확실성 담보를 위해 이행준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⁴⁰⁾ 나아가 동 수정(초안)은 모든 중요한 보관 및 관리 단계에 점검기관을 설립하고 동시에 그 절차를 일원화하여 잠재적 미비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6. 벌칙조항

EU집행위 규정(안)은 제4조(이용자 의무)와 제7조(이용자 이행준수 감시)의 위반에 대한 회원국의 처벌조치 수립과 이행조치 채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벌칙의 원칙과 내용에 대해 EU집행위는 ‘벌칙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일 것(dissuasive)⁴¹⁾을 요구하면서 벌금, 특정 용도행위의 즉각적 중지 그리고 불법취득유전자원의 압수 등을 규정하는데 그쳤으나, 제1차 수정본은 ‘유전자원 이용행위의 가치에 상응하고(proportionate) 그리고 최소한 위반으로부터 획득한 경제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⁴²⁾ 이는 효과적 이행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수준일 것을 천명한 것이다.⁴³⁾

나아가 EU집행위 규정(안)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행위에 대한 즉각적 중지

39) Id.

40) Id. 수정 배경 설명서.

41) EU집행위 규정(안) 제11조.

42) 유럽의회 제1차 수정본 제11.2(a)조(Amendment 65).

43) 이 원칙은 불법어업, 비규제, 비보고 어업행위에 대한 항구국조치협정을 위한 유럽연합이행법률 제46조에 포함된 원칙을 채택한 것이다.

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EU의회 제1차 수정본은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상품의 판매금지까지 포함하고 있다.⁴⁴⁾ 불법취득 유전자원의 압수는 가장 기본적인 처벌내용으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IV. 평가 및 시사점

유럽연합 집행위의 ABS 규정(안)이 이용자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면, 유럽의회 수정(초안)은 사실상 제공국의 ABS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제공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회 제1차 수정본은 다시 이용국의 입장을 상당 부분 보호하는 법안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바이오산업 최강국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국가들로부터 유전자원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유럽연합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과 합치되는 국내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국을 대변하는 유럽연합의 ABS 이행법률은 국내 ABS 법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1. 적용범위

나고야의정서가 의정서의 이익공유 범위, 적용대상, 시간적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 등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의정서는 협약 제15조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이 의정서는 또한 협약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라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전자원의 적용대상은 여러 ABS 국제전문가회의를 통해 파생물이 포함된다는 것은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시간적 적용범위와 장소적 적용범위이다. EU의회 제1차 수정본이 자신의 수정초안의 입장을 뒤집어 EU집행위가 제시한 “의정서 발효 후 접근되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만”을 시간적 적용대상으로 채택한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후 취득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시간적 적용대상으로 하면

44) 유럽의회 수정(초안) 제11.2(b)조(Amendment 63).

서, 의정서 발효 전에 취득한 유전자원을 계속하여 취득하거나 또는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바이오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자 친화적 접근방식은 기존에 외국으로 유출된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 를 포기하는 효과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행히 EU의회 제1차 수정본이 나고야의정서 발효 전에 접근된 유전자원을 종자은행 등에 보관하다 새롭게 이용되는 경우에는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의 정의와는 달리 유전자원의 범위에 파생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파생물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가 생물자원⁴⁵⁾이라고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파생물을 포함한 유전자원’이라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파생물에 대한 정의도 나고야의정서에서 정의된 것을 그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에 언급된 유전자원에 대해 적용된다고 하여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협약 제15조 1항 “국가가 자신의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국가의 정부에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국가 입법에 따른다”⁴⁶⁾라고 규정하여 국가 이원 지역, 국제수로, 공해 등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은 제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U의회 제1차 수정본은 명시적으로 국가이원지역, 즉 당사국의 국내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유전자원은 의정서의 장소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이러한 방향으로 장소적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이용자인 바이오산업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2. 정의조항을 통한 법률안의 명확성 제고

EU의회 제1차 수정본은 나고야의정서에서 마련하지 못한 여러 용어들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어 이행법률안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와 명확성을 제고하고 있다. 즉, ‘접근’, ‘이용자’, ‘상호합의조건’, ‘불법 취득 유전자원’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고,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암시적 정의 또한 이용자의 이행준수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EU의회가

45) 협약은 ‘생물자원’이라 함은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생물체 또는 그 부분·개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적 구성요소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2조(정의규정).

46)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1항.

‘이용자’란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또는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에 근거한 가공품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후속적으로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유럽 국가들로부터 유전자원 가공품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바이오기업의 실태에 비추어 상응하는 정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정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약재나 생약제품을 중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이익공유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통지식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나고야의정서 발표 이후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는 수 백 년 전에 널리 공개된 관련 전통지식(publicly availabl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제5조가 관련 전통지식의 보유자가 토착지역공동체인 경우에만 이익공유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ILC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불법 취득 유전자원’에 대한 정의는 나고야의정서에는 없는 규정이지만, 이행법률의 대표적 금지행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용국의 의정서 이행법률이 아니라 원산지국의 ABS 법률 또는 규제 요건이 적용법률이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럽의회가 ‘관련 국제법 또는 원산지국의 ABS 법률 또는 규제 요건을 위반하여 취득된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으로 정의하여 ‘해당 국제법(applicable international)’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지의 대상이 된다고 정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⁴⁷⁾ 동 조항은 향후 ABS 법률이나 규제 요건을 마련하지 못한 국가의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을 무단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국제법’이라는 용어를 통해 ‘불법 취득 유전자원’으로 간주될 것으로 해석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당 국제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엄청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행준수의무 이행방안

EU집행위 규정(안)과 EU의회 제1차 수정본에서 가장 특징적인 규정 중 하나는 유전자원

47) Chiarolla, C., “The Rol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under the Nagoya Protocol”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The 2010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Law and Implementation Challenges”, Edinburgh, 2-3 December 2011). In *The Nagoya Protocol in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Law and Implementation Challenges*, (eds.) E. Morgera, M. Buck and E. Tsionmani (Brill/Martinus Nijhoff, forthcoming 2012), Chapter 14.

및 관련 이용자에게 적절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1차 수정본에서 채택된 적절주의의무의 범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양도에 적용되는 조건, 유전자원 이용 관련 정보 및 문서의 진위성을 확인할 의무, ABS 관련 정보 탐색의무, 규정(안)의 관련 조항에 대한 준수사실에 관한 정보의 탐색, 보관, 제3자에게 양도 의무 등은 이행준수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조치들로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에 대한 이행준수 점검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는 강제적 신고제도는 신고시기를 PIC와 MAT 확립할 때,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 이용 관련 연구기금 수령 때 국내, 지역 또는 국제기관에 특히, 접근된 유전자원, 파생물을 포함한 가공품 그리고 바이오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제법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대상으로 한 특허신청 또는 새로운 식물품종에 권리 신청 때,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의거하여 개발한 제품의 시장판매승인 신청 때, 시장판매승인이 요청되지 않는 경우 상업화 때 등으로 규정하여 점검의 합리적 발동조건(trigerring condi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자가 제공한 구체적 우려사항에 근거한 점검발동요건, 국제인증서 수락의무, 점검에 대한 이용자 협조의무, 시정조치, 최소한의 점검방법의 범위 등 국내이행법률을 마련하는데 모두 유익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별칙조항에 대해 EU의회 제1차 수정본은 유전자원 이용행위의 가치에 상응하고(proportionate) 그리고 최소한 위반으로부터 획득한 경제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는 벌금의 부과와 효과적 이행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외국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국내산업계에 과도한 규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

V. 결 론

2012년 10월 유럽집행위의 규정(안)이 제안되고, 2013년 4월 유럽의회 소속 환경공중보건 식품안전위원회(SEVI)의 초안이 마련되어 2013년 7월 유럽의회 소속 SEVI의 수정(초안)이 확정된 후, 2013년 9월 유럽의회의 제1차 수정본에 대한 표결로 유럽의회의 제1차 수정본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유럽집행위 규정(안)은 극단적 이용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으로서 바이오업계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었지만, 유럽연합 이사회와 동등한 법률제안권을 가진 유럽의회는 SEVI를 통해 제공국 친화적 수정(초안)을 마련하였지만, 유럽의회는 결국 이용자 친화적 제1차 수정본을 결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위시한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이용자 친화적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의 방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 왔다. 유전자원이나 그 가공품의 주요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ABS이행법률과 상충되는 국내법률을 마련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 시간적 적용범위, 장소적 범위, 효력발생 시기, 이익공유 대상국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정의, 이용자 의무, 점검기관의 역할 등에 관해 유럽연합의 법률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현재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소관부처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ABS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생명자원의 종류와 소관부처에 따라 관련 법률을 달리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야생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무기관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그리고 2012년에 공포된 「생물다양성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야생생물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용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무기관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통해 보건의료용 생물자원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종자산업법」을 통해 농업, 임업, 수산용 생물자원을, 국토해양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해양 생물자원을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연구개발용 생물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⁴⁸⁾

그러나 위에 열거된 법률들에는 대부분 접근에 대한 제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원의 이용, 적용대상, 시간적 적용범위, 장소적 범위, 효력발생 시기, 이익공유 대상국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정의, 이용자 의무, 점검기관의 역할 등에 관해 합당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본질적인 목적은 다른 국가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여,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그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이행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ABS 법률의 제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BS 이행법률의 제정방향은 한편으로 국내 생물유전자원을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내 관련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건강식품업계, 바이오산업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법체계상 생물

48) 졸고,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필요사항 분석”, 「고려법학」(제68호, 2013. 3), 487쪽.

유전자원 종류에 따라 소관부처가 다른 현실을 감안하여 생물유전자원별 복수의 국내책임 기관을 지정하거나, 극단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복수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하되,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의 활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처간 협의체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싸고 국가들간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산업계, 연구계 등에 정보제공, 상담안내, 인식제고 활동 등을 통해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 당국자들의 현명한 지혜와 합리적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환경부, 「나고야의정서 후속협상 대응에 관한 연구」, 2012
- 환경부, 「나고야의정서 법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 2011.
- 환경부, 「나고야의정서 가입 타당성 분석 및 후속협상 대응에 관한 연구」, 2011.
- 환경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국제레짐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2010.
- 환경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국제레짐 국가대응전략 연구 II」, 2009.
- Executive Secretary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Synthesis of views with respect to the need for and modalities of a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Article 10)", UNEP/CBD/ICNP/2/7, 2 March 2012.
- European Un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2012.
- Chiarolla, C., "The Rol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under the Nagoya Protocol"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The 2010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Law and Implementation Challenges", Edinburgh, 2-3 December 2011).
- E. Morgera, M. Buck and E. Tsionmani, "Nagoya Protocol in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Law and Implementation Challenges", (eds.) (Brill/Martinus Nijhoff, forthcoming 2012).
- Bavikatte, K. and Robinson, D.F., "Towards a People's History of the Law: Biocultural jurisprudence and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7/1 Law, Environment and Development Journal (2011), available at [<http://www.lead-journal.org/content/11035.pdf>] (accessed 9 January 2012).
- Nijar, G.,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 Analysis and Implementation Op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South Centre: 2011).
- Nijar, G.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 an Analysis. (Centre of Excellence for Biodiversity Law (CEBLAW): Kuala Lumpur, Malaysia, 2011).